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438호 2016. 2. 11(목)

조 례

○ 사천시 조례 제1271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- 2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271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2월 11일

사천시장 송도 근

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30명"을 "35명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술분과위원회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제6호의 기술분과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